



# 소방기본법

[시행 2024. 4. 12.] [법률 제19330호, 2023. 4. 11., 일부개정]

- 소방청 (대응총괄과-총괄,소방활동,소방력동원) 044-205-7562,7572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운영) 044-205-7082
-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국고보조) 044-205-7217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소방기관설치) 044-205-7247
-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손실보상) 044-205-7412
-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044-205-7416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소방용수,화재조사,의용소방대) 044-205-7472,7476,7480
- 소방청 (구조과-생활안전활동) 044-205-7617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예방, 화재경계지구, 특수가연물, 소방안전원) 044-205-7442
- 소방청 (생활안전과-소방교육·훈련,소방박물관,소방안전교육사) 044-205-7666,7670,7667
- 소방청 (소방산업과-소방산업육성) 044-205-7502

##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 3. 8.>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부칙** <제19635호,2023. 8. 16.>(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80호, 2024. 2. 6., 일부개정]

소방청 (대응총괄과-총괄,소방활동,소방력동원) 044-205-7562,7572

소방청 (119종합상황실-119종합상황실 운영) 044-205-7082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손실보상) 044-205-741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소방용수,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044-205-7472,7476,7480

소방청 (구조과-생활안전활동) 044-205-7617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예방, 화재경계지구, 특수가연물, 소방안전원) 044-205-7442

소방청 (생활안전과-소방교육·훈련, 소방박물관, 소방안전교육사) 044-205-7666,7670,7667

소방청 (소방산업과-소방산업육성) 044-205-7502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본조신설 2018. 8. 7.]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①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8. 8. 7.]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8. 7.]

**부칙** <제34180호,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위원장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보상위원회가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해산되지 않는 경우 보상위원장(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어 같은 조 제4항의 임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